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75 발의연월일: 2024. 8. 16.

발 의 자:최은석・박덕흠・박충권

이인선 • 조지연 • 임이자

서지영 · 조승화 · 이달희

박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판단으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있도록 이른바 '작업중지권'을 부여함.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배달종사자에게도 근로자의 경우와 유사한 위험이 있음에도 이들에 대하여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되어 있 지 아니하여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게도 작업중지권을 부여하여 이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5조 및 제52조).

법률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및 제6조에서"를 각각 ", 제6조 및 제52조에서"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근로자"를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사실을 관리감독자"를 "사실을 사업주, 관리감독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고나"를 "해고, 계약해지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아 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 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 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 제6조 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및 제52조에서-----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 의 수거 · 배달 등을 하는 사람 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 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 6조 및 제52조에서-----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underline{-}$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underline{-}$ 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 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 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 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	체 없
이 그 <u>사실을 관리감독자</u>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
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생 략)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 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 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 자에 대하여 <u>해고나</u>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 다.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u>같다)</u>
,
②
사실을 사업주, 관리감독
<u> 자</u>
③ (현행과 같음)
4
해고, 계약해지 또는